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나2042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담당변호사 조민영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은

변론 종결 2020. 12. 3.

판결 선고 2021. 1. 28.

제 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2. 12. 선고 2018가단9437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2017. 12. 6.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4.경 원고에 대하여 97,000,000원의 채무를, D에 대하여 29,000,000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5. 24. C과, 원고가 C으로부터 별지 기재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고 한다) 및 이에 공용하던 차량(차대번호 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126,000,000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 중 97,000,000원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무를 면제하고 나머지 29,000,000원은 원고가 C의 D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6. 2. D에게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 29,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7. 6. 5. 고양시청에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C은 2017. 6. 14.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양시청에 위 인가신청에 대한 신청취하원을 접수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여 2017. 8. 11. 인용 결정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단101248). 또한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명의변경절차 및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2. 8.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가단83597,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3365).

마. C은 위 라.항 기재 소송의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7. 12. 6. 피고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116,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공용하던 이 사건 차량은 제외하고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만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

바. 피고와 C은 2017. 12. 7. 고양시청에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고양시는 2017. 12. 26. 위 양도·양수를 인가하였으며2),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E에게 2017. 12. 27. 40,000,000원을, 2018. 1. 3. 7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E은 위 돈에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C 측에 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고양시청에 대한 2019. 9. 30.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금 116,000,000원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제1의 나. 항 기재 2017. 5. 24.자 개인택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그 대금 상당액인 126,000,000원(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명목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97,000,000원을 면제하고, C의 D에 대한 채무 29,000,000원을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였다)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2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C의 채무초과 상태

갑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이 사건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피고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중개업을 하는 E에 게 중개를 의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통용되는 거래가격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2016다272311 판결 참조).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고양시청에 대한 2020. 1.

7.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영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서류를 대신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E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116,000,000원인 사실, 2017.

7.경부터 2018. 1.경까지 고양시청에 접수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평균 거래가격은 125,967,213원인 사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당사자들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인가신청서에 기재하기도 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등 117,000,000원3)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3, 17, 18, 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공용하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가 진행되다가 2017. 12. 5. 신청취하로 위 강제경매가 취소되었다. 즉, 위 2017. 12. 5.까지는 이 사건 차량이 압류되어 그와 결합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권이 화체되어 있다)도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제1심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1. 말경 E에게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위 강제경매가 취소된 다음날인 2017. 12. 6. 체결되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강제경매가 취소되자 즉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공용하던 이 사건 차량에는 채권가액 합계 81,400,000원(= 2,400,000원 + 50,000,000원 + 20,000,000원 + 3,000,000원 + 6,000,000원)인 5건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6건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다. 즉, 피고는 C의 재산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피고는 위 (1)항 기재 강제경매가 취소된 다음날인 2017. 12. 6.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2. 7. 고양시청에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위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인가되지 않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상적으로 인가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가 제1의 라.항 기재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4) 원고 측은 C이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고양시청에 그 양도·양수 인가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이미 고양시청의 위 인가업무 담당자에게 제1의 라. 항 기재 사정을 설명하였고, 위담당자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위 사정을 구두로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 담당자는 2017. 12. 6. 원고 측과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 쪽에서 막무가내로 소송이 있어도 양수받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5) E의 중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위 E은 영업용 자동차와 관련된 서류를 대신 만들어주는 일(일종의 서류대행)을 하는 자이고,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E의 중개에 의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일반적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6) 제1심증인 E은 '원고가 C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택시기사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고양시) 내에서만 양도·양수가 가능한 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고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관한 조례 제2조)까지 고려하면, 고양시에서 장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한 바 있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즉,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은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명의자를 피고에서 C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의 취소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고양시청의 인가가 있어야 되는 점,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공용하는 차량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차량이었으나 현재는 다른 차량으로 변경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가액 상당액인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동혁, 판사 김태현, 판사 이민영

별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표시

1. 자동차번호 : H
2. 사업면허번호 : 2005-068
3. 성명 : C
4. 주민등록번호 : I
5. 주소 : 파주시 J, K호
6. 면허일자 : 2011. 2. 25.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동 사업에 공용하는 차량의 양도·양수는 엄연히 별개의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82누270 판결 참조).

2) 행정청은 위 라. 항 기재 처분금지가처분의 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아니어서 그 효력이 미치지

않고, 설령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청의 면허 처분에 따른 인가 금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8. 자 2010마1576 결정 참조).

3) 양도대금 1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원은 수수료 기타 비용인 것으로 보인다.